

1. 개정이유

「결핵예방법」 제11조에 따른 잠복결핵검진 결과를 교육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에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경력증명서 서식의 ‘임용 과목’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「결핵예방법」 제11조에 따라 소속 교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잠복결핵검진 결과를 개인별 인사기록에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(안 제4조)

나. 교육공무원의 경력증명서 서식에 ‘임용 과목’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, 경력증명서만으로 임용 과목별 교육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(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2025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교육부령 제 호

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

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「결핵예방법」 제10조에 따른 잠복결핵검진 확인서
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경 력 증 명 서

인적사항	성명	한 글		한 자		생년월일
	주소					

경력사항	근 무 기 간			직 급 (직 위)	임 용 과 목	근 무 부 서
	부 터	까 지	근무연수			
			년 월 일			
			년 월 일			
			년 월 일			
			년 월 일			
			년 월 일			
			년 월 일			

근무기간	년 개월		최종 직위(직급)	
퇴직사유				

상벌사항	포 상			징 계		
	연 월 일	종 류	시 행 청	연 월 일	종 류	시 행 청

직위해제	연 월 일	사 유	처 분 청

용도	
----	--

위와 같이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(임용권자)

직인

경력증명서

인적사항	성명	한글	한자		생년월일	
	주소					

경력사항	근무기간			직급 (직위)	임용 과목	근무부서
	부터	까지	근무연수			
			년 월 일			
			년 월 일			
			년 월 일			
			년 월 일			
			년 월 일			
			년 월 일			
			년 월 일			
			년 월 일			

근무기간	년 개월	최종 직위(직급)	
용도	※ 이 증명서는 「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」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취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		

위와 같이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(임용권자)

직인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개인별 인사기록) ① 개인 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11.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12. · 13.</u> (생 략) ② (생 략)	제4조(개인별 인사기록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11. (현행과 같음) <u>12. 「결핵예방법」 제10조에 따</u> <u>른 잠복결핵검진 확인서</u> <u>13. · 14.</u> (현행 제12호 및 제13 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